

인천국제공항 수출입화물 처리절차

I. 일반사항

인천국제공항의 수출입화물 처리절차 중 변경되지 않은 부분은 현행 절차에 의함

II. 수출화물

1. 수출통관(현행과 같음)

가. 공항(김포·인천)세관 수출통관

- 수출화주는 수출물품을 인천공항 및 김포터미널까지 운송하여 계약된 보세구역에 반입
- 보세구역운영인은 인수받은 수출물품에 대한 내역을 화물관리대장에 기록(전산에 의한 기록 가능)
- 수출화주는 공항 소재 관세사에게 수출신고의뢰
- 관세사는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고 세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출신고필증을 수출화주에게 전달

나. 내륙지세관 수출통관

- 수출화주는 수출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의 관세사에 수출신고의뢰
- 관세사는 세관에 수출신고하여 세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출신고필증을 수출화주에게 전달
- 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에 제조·가공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서에 경유지보세구역명을 반드시 기재
- 수출화주는 수출신고수리물품을 인천공항 및 김포터미널까지 운송하여 계약된 보세구역에 반입
- 보세구역운영인은 인수받은 수출물품에 대한 내역을 화물관리대장에 기록(전산에 의한 기록 가능)

다. 반송물품

- 반송신고수리물품은 수출신고서식을 사용할지라도 수출물품이 아니고 외국에서 도착한 외국물품이므로 보세운송절차에 의하여 운송

라. 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

- 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에서 제조·가공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은 외국물품이므로 보세운송절차에 의하여 운송

2. 항공운송의뢰(현행과 같음)

- 수출화주는 항공사 또는 포워더에게 수출물품에 대한 항공운송의뢰
 - 수출화주는 ULD작업전까지 수출신고필 내역을 반드시 포워더에게 제공
- 포워더는 항공사에 기적예약

3. ULD작업(변경)

- 포워더는 ULD작업전에 수출신고필 여부를 서류(원본 및 사본) 또는 전산에 의하여 확인
-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하여 항공운송용 콘테이너 작업 및 파레트 작업 실시
- ULD 작업장소
 -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의 ULD작업은 수출해주 공장, 보세구역에서 수행
- 보세구역운영인은 콘테이너 적출입을 한 경우에는 화물반출입대장(전산설비에 기록하는 것을 포함)에 작업내용을 기록관리

4. 김포터미널과 인천공항간 ULD 운송(신규)

- 김포터미널(경인 ICD등 포함)에서 ULD작업후 인천공항으로 운송
- 인천공항내 보세구역에 ULD가 반입된 경우 운영인은 콘테이너 적입된 화물내역을 화물관리대장에 기록 유지

5. 기적(현행과 같음)

- 조업사는 항공기에 수출물품을 적재
- ※ 수출물품(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의 제조·가공물 품 포함)은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이내에 기적

6. 적하목록 작성 및 제출(변경)

- 항공사는 M B/L Simple화물에 대하여 B/L내역과 수출 신고번호 및 화물관리번호를 기재하여 MFCS로 전송
- 포워더는 M B/L Consol화물에 대하여 H B/L내역과 수출신고번호 및 화물관리번호를 기재하여 MFCS로 전송
- 항공사는 항공기 출항 이일 세관근무시간까지 MFCS에서 적하목록을 취합하여 세관에 전송
- ※ 포워더가 항공사의 M B/L를 발행하는 경우 항공사를 대리하여 M B/L내역을 MFCS에 전송가능

III. 수입화물

1. 적하목록 작성(변경)

가. M B/L의 작성

- 항공사는 M B/L내역과 M B/L Simple화물의 하기장소 및 배정장소 코드를 기재하여 MFCS로 전송

나. H B/L의 작성

- 포워더는 M B/L Consol화물에 대하여 M B/L의 하기장소코드와 H B/L의 배정장소코드 및 내역을 기재하여 MFCS전송
 - 하기장소는 인천공항 및 김포터미널내 보세구역
 - 배정장소는 MFCS상의 배정 D/B에 있는 보세구역
 - MFCS의 하기장소 및 배정장소 D/B이용은 KTNET 와 협의
 - 하기장소 및 배정장소 코드 : 별첨

다. 하기장소 및 배정장소 미기재화물의 처리

- 항공사와 포워더간 계약이 있는 경우
 - MFCS상 하기장소 또는 배정장소 D/B에 있는 경우에는 D/B를 참고하여 기재
- 항공사와 포워더가 계약이 없는 경우
 - 항공사와 계약된 장소로 기재

라. 항공기 입항전까지 AWB내역 미제출 화물의 처리

- 입력대행사무소에서는 포워더와 계약에 의하여 AWB 내역과 하기장소 및 배정장소 입력
 - 하기장소가 김포터미널인 경우 배정장소를 세관구내장치장으로 지정

2. 하기장소 및 배정장소 결정(변경)

가. 하기장소 결정

- M B/L Simple화물 : 항공사가 화주와 협의 결정
- M B/L Consol화물 : 포워더가 화주와 협의 결정

나. 배정장소 결정

- M B/L Simple화물 : 항공사가 화주와 협의 결정
- M B/L Consol화물 : 포워더가 화주와 협의 결정

다. 특수화물에 대한 하기 및 배정장소 결정

- 1 M B/L에 10 H B/L(인천 통관 : 5 B/L, 김포통관 : 5 B/L)이 있는 경우
 - 하기장소가 인천인 경우
 - H B/L 10건 모두 인천에 반입
 - 5건 인천공항통관
 - 5건 김포터미널로 보세운송
 - 하기장소가 김포인 경우
 - H B/L 10건 모두 김포터미널로 하기운송
- 특수화물(환적화물, 냉동, 냉장화물, 위험물 등)이 있는 경우 항공사는 포워더와 협의하여 하기장소를 기재
- 콘테이너작업을 하기 위한 환적화물은 김포공항으로 하기가능
- 적하목록을 세관에 제출전까지는 MFCS에서 하기

장소 및 배정장소 코드를 수정하여 전송가능

- 입항전수입신고(PREC) 및 입항전보세운송신고(PRET)는 적하목록제출전까지 가능
 - 관세사 및 보세운송업자는 입항전신고내역을 MFCS로 전송하고 항공사, 포워더에 통보
 - 입항전신고는 인천공항에서만 가능

3. 적하목록 제출(현행과 같음)

- 항공사는 항공기 입항과 동시에 MFCS에서 적하목록을 마감하여 세관하여 1차전송
- 항공사는 포워더가 1차전송시까지 제출하지 못한 AWB를 선별
 - 입력대행사무소에 전달하여 입력후 2차전송

4. 하기(현행과 같음)

- 적하목록 제출시 MB/L단위로 하기장소코드를 기재한 것으로 하기신고에 같음
- 조업사는 항공기 도착 즉시 하기하여 실물분류장으로 이동

5. 실물분류(변경)

- 항공사는 MFCS로부터 MB/L 하기장소 또는 HB/L 배정장소코드가 기재된 실물분류 작업지시서를 출력하여 조업사에 전달
- 조업사는 아래의 실물분류방법을 선택하여 실물분류작업 실시
 - MB/L단위로 실물분류
 - HB/L단위로 실물분류
 - MB/L 또는 HB/L단위를 혼합하여 실물분류
- 항공사는 실물분류팀으로부터 전달받은 MB/L별 하기결과이상내역을 세관에 신고
- 포워더가 MB/L단위로 인천공항 현도장치장에서 수입화물을 인도받은 경우 인천공항 또는 김포공항 보세구역 운영인에게 HB/L별로 반입의뢰
 - 항공사는 입항전신고화물을 포함하여 포워더에게

인도 가능

- 포워더는 입항전신고화물에 대하여 수입화주와 계약에 의하여 보세운송업자등에게 인도
- 인천공항에서 보세운송하고자 하는 물품이 있는 경우 포워더는 계약된 보세구역운영인에게 반입의뢰하며, 반입신고후 보세운송신고절차 수행
- 하기장소 보세구역운영인은 HB/L별로 세관에 반입신고
 - HB/L에 이상이 있는 경우 반입이상유무를 세관에 보고

6. 인천공항 보세구역 반입/반출신고(현행과 같음)

가. 보세구역 운영인의 반입신고

- 인천공항 보세구역을 하기장소로 정한 MB/L화물은 HB/L단위로 입항반입신고

나. 반입신고 생략대상

- 입항전 수입신고/보세운송신고 수리된 화물
- MB/L단위의 환적화물

다. 반출신고

- 보세구역 운영인은 화물반출시 관세청의 EDI통보내용

7. 환적화물관리(현행과 같음)

- 보세구역설영인은 환적화물 장치장소를 세관에 신고
- 세관에 반출입신고는 생략하나, 항공사는 반출입에 대한 기록을 유지(전산에 의한 기록 가능)

8. 실물분류후 이상화물의 처리(현행과 같음)

- 실물분류작업시 과부족 등 이상이 있는 경우
 - 항공사는 실물확인 후 이상사유를 기재한 하기결과 이상보고서를 세관에 제출
 - 항공사는 포워더에게 과부족화물 인도가능하며 이 경우 하기장소 반입전까지 적하목록 정정
- 하기장소 보세구역운영인은 반입한 화물중 이상이

자 료

있는 경우 반입신고시 세관에 보고

- 적하목록이 정정되지 않은 과부족화물에 대하여는 보류장치장에 별도관리

9. 인천공항 복운창고의 운영(신규)

- 인천공항 복운창고는 하기장소 보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 특송화물창고와 수출입화물창고를 분리 보세구역 특허

- 각 보세구역에는 수출화물과 수입화물을 장치할 수 있는 구역을 구분하여 운영

- 복운창고로 하기하는 경우

- 세관에서 지정한 하역통로를 이용하며 화물터미널 보세구역운영인은 하기운송업체에게 물품 인도

- 운송업체는 인천공항 보세구역운영인에게 적하목록 사본을 제시

- 하기운송업체 : 조업사 또는 간이보세운송업자
 - 간이보세운송업자가 하기하는 경우 보세구역 또는 포워더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내역을 세관에 신고(신고서류 : 운송계약서, 불법유출행위 방지서약서)

10. 김포공항으로 운송(신규)

- M B/L상 하기장소가 김포공항인 경우 보세운송 절차없이 하기운송

- 보세운송업체는 인천공항 보세구역운영인에게 적하목록사본을 제시

- 김포공항까지의 하기운송

- 세관에서 지정한 하역통로를 이용

- 운송업체 : 간이보세운송업자
 - 간이보세운송업자가 하기하는 경우 보세구역 또는 포워더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내역을 세관에 신고(신고서류 : 운송계약서, 불법유출행위 방지서약서)

- 하기운송하는 보세운송업체의 운전자는 하기운송하는 화물의 목록(적하목록) 사본을 소지

- 간이보세운송업자가 하기운송을 하는 경우에는 유개차로 하기운송

- 다만, ULD단위화물 및 장척화물 등 유개차에 적재 할 수 없는 경우 예외(세관에 신고)

- 하기장소의 변경

- 하기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하기장소 반입신고전에 하기장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김포공항으로 하기운송

- 보세구역에 반입신고한 화물을 타 보세구역으로 운송하려면 보세운송절차에 의하여 운송

- 다만, 인천공항내 보세구역간 이동 및 김포공항내 보세구역간 이동은 반출입절차에 의하여 이동

11. 하기운송에 의한 김포터미널 반입(변경)

- M B/L 단위로 운송된 경우

- 해당 장치장에서 H B/L단위로 입항 반입신고

- 보세운송업체는 김포화물터미널 보세구역운영인에게 적하목록사본을 제출

- 보세구역 운영인은 반입이상화물에 대하여 세관에 이상보고

- 하기운송에 대한 화물감시

- 간이보세운송업체는 운송차량에 보세운송 스티커 부착

- 보세구역운영인(보세사)은 화물발도착시 보세운송 차량 스티커 부착여부, 적하목록과 화물의 대조확인

- 세관직원은 보세사의 업무에 대하여 수시 확인

- 반입신고기한

- 항공기가 세관근무시간내에 도착한 경우 당일증진

- 항공기가 세관근무시간이후에 도착한 경우 익일 증진

12. 입력대행사무소 운영(현행과 같음)

- 항공사 및 포워더의 H B/L 제출을 위해 KTNET는 입력대행사무소를 설치 운영

자 · 료

항공수입화물 배정CODE

김포지역 장치장	배정CODE	인천지역 장치장	배정CODE	비 고
김포세관구내장치장	0			
FEDEX장치장		FEDEX장치장	FX	
UPS장치장		UPS장치장	UX	
		DHL장치장	DH	
		복운창고(북측)	FO	
		복운창고(남측)	FK	
ASIANA제1장치장	GOZ	ASIANA장치장	OZ	
		ASIANA 위험물창고	DG	
ASIANA 캐터링	GZ1	ASIANA 캐터링	Z1	기내식보세공장
ASIANA자가장치장	GZ2	ASIANA 제1자가장치장	Z2	기체소모품 및 장비
		ASIANA 제2자가장치장	Z3	
		아시아나공항서비스 장치장	OL	
KAL장치장	GKL	KAL장치장	KL	
KAL캐터링	GK1	KAL캐터링	K1	기내식보세공장
KAL자가장치장	GK2	KAL 제1자가장치장	K2	기체소모품 및 장비
		KAL 제2자가장치장	K3	
AK장치장	GAL	KAS장치장	AL	
ACT장치장	ACT			
		통과화물	TS	
		내국TS(김해운송)	DT	
		계류장	KS	
		현도장	T	서울 / 구로지역장치장을 제외한 보세구역으로 보 세운송을 할 경우
		여행자수표 및 화폐, 군수 물자, 유해	T	
		검역대상화물	Q	
		신문잡지	N	
		외교관 및 정부물품	P	DIPLOMATIC POUCH
		미군사화물	G	G.B.L

자 . 료

서울/ 구로지역장치장	배정CODE	비 고
서울세관구내장치장	S,S1	S1은 IBM등이 이용
삼원보세장치장	SW	
삼덕보세장치장	SD	
천우보세장치장	CW	
성동보세장치장	SA	
삼홍보세장치장	SH	
신흥보세장치장	SV	
천일보세장치장	GN	
대한통운협진보세장치장	HJ	
조우회보세장치장	OS	
구로세관구내장치장	GC	
구로공단장치장	GL	
구로보세장치장	GB	
구로서영장치장	GY	
부평세관구내장치장	BC	
부평공단장치장	BL	
동양물류센타	DY	
KWE코리아 장치장	KWE	
한진 부곡 보세장치장	HT	
대한통운국제물류	HI	
조 우 회(인천)	IN	
조 우 회(이천)	OS	
수원상원물류	SSW	

특수화물 구분	CODE	비 고
보냉화물	C	COOL의 약자
냉동화물	F	FRIZEN의 약자
보온화물	W	WARM의 약자
위험물	D	DANGER의 약자
안보위해물품	A	ARM의 약자
한약재	M	MEDICIN의 약자
귀중품	V	VALUABLE의 약자
부페성물품	P	RERISHABLE의 약자

※ 특수화물CODE 기재방법 : 배정CODE와 조합하여 사용 예) AL/C, AL/DCV

※ 항공사에 긴급분류요청에 의해 배정DB와 다른 배정처로 배정을 요청할 경우의 배정코드 :AL/YO
(YO 기재는 분류실에서만 사용, 포워더는 사용하지 말것)

<자료 : 관세청>